

의안번호 제52호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윌일	2017. 6. 12.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52호 제출연월일: 2017. 6. 12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5. 08. 04일 완료되었고, 2009. 10. 특별 회계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함에 따라 『논산시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』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를 폐지 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: 2017. 5. 15. ~ 2017. 6. 5.

(나) 결과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건설정책과

□ 폐지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도시주택과장	조 삼 구
안	도시재생팀장	이 승 노
자	담 당 자	김 갑 중 (746-6204)

참고

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(이하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설치) 특별회계는 논산시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"사업"이라 한다)구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세입세출) ① 특별회계는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,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제경비를 세출로 한다.

- ② 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하는 세출예산은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,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(이하"금융기관"이라 한다)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용금액은 사업지구의환지확정 처분후 청산완료전까지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

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 지정)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.

- 1. 특별회계 징수관 : 행복도시국장
- 2.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: 도시주택과장
- 3. 특별회계 재무관 : 친절행정국장

- 4.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: 회계과장
- 5.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: 업무담당주사
- 6. 특별회계 지출원 : 경리 업무담당주사

제5조(재원) 이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, 징수청산금, 보조금,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.

제6조(경리)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. 다만, 세입에 부족이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7조(집행잔액의 사용)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 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결산)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증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. 제9조(일반회계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.